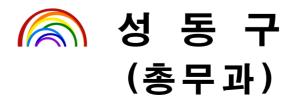


문서번호	총무과-33507
결재일자	2014.11.19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475호

*	•			四岁日代三章	Et. 30; 415
주무관		총무팀장	총무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
박대웅		이민채	이창호	代이창호	11/19 유재룡
	기획예산과	장 <b>박</b> 기	웅		
협	법률전문관	권설	!O <del>l</del>		
조	예산팀장	이정	형희		
	법제팀장	이실	<b>;</b> 수		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 계획

2014.11.



# 사 전 검 토 사 항

::: 해당사항에 ☑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	목	검 토 여 부				
사 업 구	구 분	신규사업 □ 공약(약속)사업 □ 계속사업 ☑ 인센티브/공모사업 □				
ᆺᄛ	통 분 야 려 사 항	● 구 민: 유□( ) 무☑				
		<ul><li>전 문 가: 유□(</li></ul>				
<i>코</i> 더 ^		● 이해당사자 : 유 □ ( ) 무 ☑				
기	타	일 자 리 □ 환경영향 □ 안 전 □ 유지비용 □ 바른 공공언어 □				
고 려 서	나 항	성 인 지 □ 취약계층 □ 장 애 인 □ 디 자 인 □ 갈등발생 요인 □				
		● 중 앙 부 처 : 유 □ ( ) 무 ☑				
디지이	년 활용	<ul><li>● 서 울 시: 유□(</li></ul>				
다사건		<ul><li>기업: 유□(</li></ul>				
		● 민 간 단 체 : 유 □ ( ) 무 ☑				
언론 흥	를 보	기획보도 □ 보도자료 □ SDTV □ 성동뉴스레터 □ 성동구소식지 □				
계	획	기 고 문 □ 전자행정서비스 □ S N S □ 기타(리플릿 등) □ 없 음 ☑				
◎ 홍 보 제 목 :						
● 중점 홍보사항						
-						
-						
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						

####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」일부 개정 계획

당직근무자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성동구 당직근무 규칙을 개정, 예산편성 기준 범위 내에서 당직비를 적정하게 인상코자 함

### I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
-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(안전행정부, 2014. 7.)
- 2015년도 사업예산 편성계획 알림 (기획예산과-9876(2014.9.4.))

#### Ⅱ (개정이유

- 당직근무자의 내 · 외적 근무여건 변화 및 민원처리 증가 등 근무 부담 가중에 따라 직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 대두
-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
  - 공무원 '일·숙직비' 기준경비 개정
    - 일·숙직비는 자치단체 및 국가의 일반적인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 (50,000원 이내)을 설정하여 운영 중임
    - 자치단체별 근무여건,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**기준액의 20%** 범위내에서 자율조정 가능토록 개정

# Ⅲ 대정내용

- 당직수당 조정
  - 현 행: 50,000원
  - 변 경: 60,000원으로 상향 조정 (20% 인상)

### IV ( 추진일정

- **네** 개정규칙안 입법예고: 2014. 11. 20. ~ 12. 10. <20일간>
- 심사 및 평가: 입법예고 기간 중
  - 부패연항평가(감사담당관), 규제심사(규제가변축주단), 성별영향분석평가(보육가족과)
- **ച** 조례규칙심의회 심의: 2014. 12. 11.
- 규칙 공포: 2014. 12. 31.
- **교** 규칙 시행: 2015. 1. 1.
- 붙임 1. 서울특별시 성동구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  - 2. 現)서울특별시 성동구 당직근무 규칙 1부. 끝.